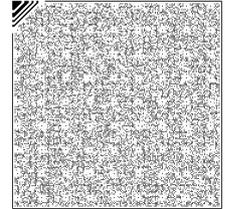




# 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  
(경유)

제목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

1.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.
2. 정부가 국민 휴식권 보장 및 내수 진작을 위하여 '23. 10. 2.(월)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,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.  
\* 인사혁신처공고 제2023-400호(2023.9.6)
3. 임시공휴일('23.10.2.)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4.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,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.  
- 이러한 조치는 「의료법」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·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 끝.

## 보건복지부장관

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간호협회장, 대한치과병원협회장, 대한치과의사협회장, 대한한방병원협회장, 대한한한사협회장, 대한요양병원협회장, 대한약사회장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 보건복지부장관(보건복지상담센터장)



주무관	<b>박혜진</b>	보건사무관	<b>배윤영</b>	보험급여과장	전결 2023.9.18. <b>정성훈</b>
협조자	보건사무관	<b>조영대</b>	행정사무관	<b>박소영</b>	서기관 <b>이유리</b>
시행	보험급여과-4636 (2023. 9. 18.)		접수		
우	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			/ <a href="http://www.mohw.go.kr">http://www.mohw.go.kr</a>	
전화번호	044-202-2743	팩스번호	044-202-3937	/ <a href="mailto:ellenpark127@korea.kr">ellenpark127@korea.kr</a>	/ 대국민 공개